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7. 2

다. 상 정 일 자 : 97. 2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웅

나. 제안사유

ㅇ 군정운영에 따른 정책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해주고 타법령 용어와의 일치시키기 위함.

다. 주요내용

ㅇ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
-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자가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100㎡ 이하 건축 및 부속토지 취득시 감면 포함

ㅇ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개정
- 전용 60㎡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물만 50%감 하였으나 건축물과 부속토지 포함 감면

ㅇ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를 동 법률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으로써 최초 취득한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

ㅇ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 재개발 건축사업 시행자나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 건축을 최초로 취득시 재산.종토세 50%감면(단 5년 이상 입점자는 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o 동 조례 개정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 용어 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16

제출년월일 : 1997. 2. 17.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 용어 개정에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1, 2항)

-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
-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항 신설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1항)

-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물만 50%경감 하였으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50%경감 (종토세, 재산세)

다.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 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표3의 업종을 위하여 협동화 사업단지 내에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

라.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 18조 2항)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자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나, 재건축 당시의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 건축 사업 시행으로 최초로 취득하는자 지방세 감면조항 신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0조 1항으로 하고 제10조 1항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 동항 단서중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하며, 동조동항 1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의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 . . .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 .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토지를 . . . .) 재산세는 . . . . 사용승인일부터 . . .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	1. . . . . 사용승인일까지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생 략)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 2. (생 략)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제12조(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 . 승인을 받은자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